

中國 民營經濟의 成長政策： 그 背景, 變化過程 및 效果

董 向 榮

중국 민영경제⁽¹⁾는 장기간 지속된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그 발전이 크게 제한을 받아 왔다. 1950년대 중반의 사회주의 개조시기부터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전까지 20여 년간은 중국 민영경제에 있어 거의 공백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의 빈곤문제와 도시의 취업난으로 인해 중국정부는 1978년부터 적극적으로 민영경제를 수용, 장려, 촉진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중국 민영경제의 성장은 각 단계의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큰 기복이 있었으나 20여 년간의 발전을 거쳐 ‘불법적’에서 ‘합법적’으로, ‘국민경제의 유익한 보충형태’에서 ‘국민경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발전해 왔고, 현재 중국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경제형태이다. 본고는 단계별로 민영경제의 발전과 관련 정책변천의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경제의 발전과 정책변화의 상호작용 및 이로 인한 중국 정치, 사회 등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 머리말

1970년대 이후 세계사의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여러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개혁은 이를 국가를 종래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시키는 경로를 탐색하며, 국유기업 이외에서 국가경제성장의 원천을 찾아내는 데 그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은 최초로 개혁을 시도한 국가는 아니지만 개혁의 성과를 보면 다른 사회주의 국가보다 앞선 나라이다. ‘나라마다 경제구조조정을 통해 종래 체제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중국보다 더 급격하게 구체제에서 벗어난 나라는 없을 것이다’ [Deborah and Vogel(1990, p. 1)].

중국의 점진적 경제개혁의 핵심은 민영경제를 어느 정도 국유경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점차 키워서 국가경제성장의 주된 부문으로 양성시키는 데에 있다. 중국 개혁 20년의 중요한 성과는 바로 활발한 비국유경제부문을 키워냈다는 것이다. 현재 민영부문은GDP 성장의 70% 이상을, 일자리 창출의 95%를, 그리고 국민경제성장률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樊綱(1999, p. 8)]. 1989-1999년 사이 민영경제 업체 수와 종업원 수는 30% 이상 증가하였

(1) 중국의 민영경제는 개체경제와, 노동자가 8명 이상인 민영기업의 2가지 종류가 있다.

으며[程秀生(1999, p. 8)], 등록자본금, 생산량, 상품소매금액 등의 지표는 60% 정도 증가하였다. 1999년까지 민영경제가 공업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상승하여 28.5%를 차지하는 국유경제를 앞질렀다. 같은 해 전국상품소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28.8%에서 51.5%로 상승하여, 국유경제(24.3%)와 集體經濟(18.2%)의 합계(42.5%)보다도 훨씬 높았다.⁽²⁾ 기타 경제부문과 국유경제부문의 노동생산성 비율은 2.8:1[胡鞍鋼(1999, p. 34)]이다. 민영경제는 WTO 가입 후 국유경제 대신 중국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중국의 공업은 예전에는 국유부문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중국 미래의 번영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은 민영부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다’ [Neoh(1999)].

최근 민영경제의 빠른 성장에 따라서 중국학계에서는 민영경제에 관한 연구와 논쟁을 날로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다. 주안점은 국유부문을 줄이고 대신 민영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경제발전의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기반 조성을 다같이 중시하며, 건전하며 질서 있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 시스템을 확립하는 가운데, 국유기업 대신 경제성장의 주된 부문으로 민영기업을 양성하여야 함을 강조한다[張維迎(1998), 吳敬璉(1999)]. 인류학자들은 중국의 비대한 행정부문, 창조성이 부족한 정부부문, 그리고 능률 수준이 낮은 국유기업이 개혁과정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이 구체제의 틈에서 짹튼 민영경제의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민영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한 나라의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경제의 현대화 이념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尹保雲(1999, pp. 316-330)]. 사회학자들은 민영경제의 발전이 사회계층구조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국의 중산계층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중산계층이 가진 조직이념과 계약의식을 바탕으로 한 민주와 자유의 정신으로 국가권력의 무한확장을 억제하고 더 나아가 민주정치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姚榮偉(1999, p. 91)]. 이렇듯 중국에서는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민영경제에 관심을 쏟고 민영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민영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가, 혹은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 아래 중국정부에 의한 민영경제 정책의 변천 원인, 과정과 그 결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먼저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의 중국 민영경제발전의 공백기와 이로 인한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 살펴본다. 둘째, 농촌의 빈곤과 도시의 취업난으로 인하여 중국정부가 個體經濟를 기점으로 민영경제에 대한 태도를 전환한 과정,

(2) <http://www.cei.gov.cn>(中國經濟信息홈페이지), 2000년 1월 31일.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의 양태를 살펴본다.셋째, 민영경제의 정책변천으로 인해서 중국의 사회, 정치 분야에 일어났던 큰 변화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民營經濟 20餘 年間의 空白期와 經濟的 困境

우선 민영경제의 정책적 후퇴와 이로 인하여 초래된 심각한 경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1949년 건국대강이면서 중국의 첫 헌법의 역할을 했던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은 민영경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國유경제, 合作社경제, 농민과 수공업자가 중심이 되는 個體經濟, 개인 자본주의경제와 국가 자본주의경제 등 각 경제형태의 공존을 조화시키고 국유경제의 지도 하에 서로 협력하고 촉진하며 제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여 사회의 경제발전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무릇 국가계획과 국민생활에 유익한 모든 민영경제에 대해 인민정부는 그 경영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고 그 발전을 도와 주어야 한다.’

이는 첫 헌법이 당시 민영경제를 적대시하는 경향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54년에 공포된 헌법에서도 개인사업경영자소유제와 자본가소유제는 모두 중국 생산자원소유제의 기본적인 형식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激進主義 노선이 등장하면서 사회주의 개조를 거쳐, 개인 자본주의기업만이 公私合營되었던 것이, 모든 자본주의기업이 모두 공사합영으로 전환되어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국유경제부문과 똑같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전국의 개인사업경영자 수는 1952년의 817만 명에서 1955년의 513만 명으로 급감하였으며, 1956년에는 16만 명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같은 해 9월에 중국공산당 대표대회 제8차 회의(이하 8대)에서 국무원 부총리 陳云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혔다.

‘중국의 사회주의는 이런 것이다: 공상업 분야에서 국유경제와 集體經濟로 주체를 이루는 동시에 부분적인 個體經濟가 국유경제와 集體經濟의 유익한 협조형태로 존재한다.’

이는 個體經濟의 지위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8대를 계기로 정부는 個體經濟를 회복,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57년 전국의 개인공상업 종업원 수는 104만 명으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내부나 사회적 여론은 個體經濟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명확하지 못하였고, 個體經濟의 발전상황은 전체적으로 침체상태에 멈추어 있었다.

1966년부터 중국은 전례 없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들어섰고, 경제발전전략이 현대화로 향하던 기정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하였다[羅榮渠(1997, p. 125)]. 個體經濟는 ‘자본주의의 꼬리’로 간주되어 점차 사라지게 되었으며, 전국의 개인 공상업 종업자 수는 갈수록 줄어들어

1978년에는 14만 명으로 감소하였다[吳振坤(1998, pp. 71-72)]. 이에 따라 중국은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 국민생활이 날로 어려워져 도시에서는 대다수의 생활필수품을 배급권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농촌에서는 농민들의 餓死로 사회생산력이 붕괴 직전 상태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1949-1971년 동안에 연간 인구 출생률이 3%를 초과하였는데[『中國人口統計年鑑』(2000, p. 455)], 이처럼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구출생률은 1960년대 말부터 심각한 취업난을 초래하여 이후 갈수록 심해졌다. 중국의 공업화전략은 국가 사정에 맞는 노동집약형인 경공업중심이 아니라, 기술과 자본집약형인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경제구조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관련 부문으로의 노동력 이전이 따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시화는 계속해서 공업화의 진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중국은 엄청난 저축력을 키워낼 수 있는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였다. 대량의 자원이 가능한 한 소비재가 아닌 생산원료에만 쓰인다. 공업은 소비자들로부터 저축을 얻는 주요 수단이다’ [Gilbert Rozman(1995, p. 415, 435)]. 이러한 상황에서 공업의 발전은 농촌의 잉여노동력은 커녕 도시의 고유한 노동력조차 흡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취업의 통로는 막혀 있는 실정이었다.

1960년대 중반 정부는 ‘上山下鄉’ 등의 조치를 통하여 도시의 취업난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강제로 취업활동을 집행하는 것은 공업화의 발전방향과 서로 배치되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공업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농촌의 각종 생산자원을 강제로 착취하여 농업의 발전을 더욱 부진하게 만들었다. 농민생활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만약 홍년이 들면 수많은 농민들이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

등소평 復出 후, 거의 붕괴상태에 이르렀던 사회, 정치, 경제적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정부는 경제현대화방안에 대한 탐색을 새롭게 시작하였는데, 이는 중국 역사상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실용주의자인 등소평은 개혁의 의미에 대해 일찍부터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그의 말에 의하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중국의 活路는 없다’고 하였다[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1993, p. 370)].

농촌에서는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생존욕구를 충족시키고 끊어죽는 위협을 없애기 위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聯產承包責任制’를 창조하였다. 이 새로운 제도는 다행히도 정부에 의해 수용되었고, 정부는 실험을 거쳐 즉시 그 효과를 인식하고 단계별로 전국지역에 보급하게 되었다. 이는 또한 중국 경제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광대한 농촌지역에 뿌리가 내렸고, 중국 사정에 알맞은 노동집약형 위주의 鄉鎮企業들이 ‘異軍突起’(군대가 돌연 나타난다는 뜻)하였다. 향진기업의 등장은 개혁의 주도자와 경제학자들이 예상치 못했던 현상으로서, 어떤 면에서 보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해 온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농민들 스스로의 발상으로 이루어진 제도적 창신이 정부의 암묵적인 허가와 수용을 받아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 주었다.

이로부터 중국은 농촌부터 출발하여 현대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包產到戶’ 와 향진기업의 ‘異軍突起’ 가 전통경제체제에 미친 충격적인 영향이 없었다면 중국은 개혁을 단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행히 중국의 경제개혁은 농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개혁과 공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압력과 충격력이 농촌이라는 특수한 지역을 통해 완화될 수 있었다. 농촌에서부터 출발한 중국의 경제개혁은 그 위험성과 소요되는 자본 면에서 도시중심전략보다 훨씬 이상적이었다. 중국은 적당한 자리, 즉 농촌부터 개혁을 시작했으므로 제2의 동유럽이나 러시아가 되는 것을 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된 개혁으로 국유경제에 필적할 만한 민영경제를 키워낼 수 있었다.

3. 民營經濟政策의 緩和와 그의 回復과 安定의 發展(1978-1991)

3.1. 個體經濟의 回復, 그리고 ‘開放시키고 活性化시키자’ (放開搞活)政策

1978년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를 계기로 중국은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聯產承包制의 등장과 보급은 오랫동안 억제되어 온 농업 생산력에 활기를 불어 넣었고, 농업발전은 참신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장기간 빈곤 상태에 살았던 수억 명에 이르는 중국의 농민층이 밥 먹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호전에 따라서 個體經濟와 고용경제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시의 경우, 제11기 3중전회 이후 정부가 ‘上山下鄉’ 운동을 중단하였으므로, 새롭게 증가된 노동력과 도시로 돌아가는 학생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유경제부문과 단체경제부문에서 정부가 배정한 일자리 수는 실제수요를 밀돌았다. ‘우리도 밥 먹어야 되고 우리도 일해야 된다’ 는 구호를 외치며 농촌에서 돌아온 학생들을 직면한 각지방정부는, 심각한 취업난 앞에서 ‘自謀職業’ (스스로 직업을 찾는다는 뜻)을 호소하였다. 당시의 이런 젊은 세대가 중국의 개혁개방 후 도시 개인사업경영자의 제1세대가 되었다.

1979년 초 문화대혁명 이후 제1차 전국공상국국장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제11기 3중전회의 취지와 당시의 취업상황을 감안하여, 공인고용은 금지하되 도시주민 중 일부 잉여노동자가 수리, 서비스업 등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혀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리고 중국 건국30주년 경축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 葉劍英은 현재 도시와 농촌의 일정 범위에서 존재하는 노동자 個體經濟 형태는 사회주의경제의 유익한 협조형태라는 사실을 다시 인정하였다. 이는 의심할 바 없이 그 당시의 개

인사업경영자들에게 좋은 동기를 부여하였다.

1980년에 중국공산당이 주최한 전국노동취업회의에서 국가에 의한 취업 통일배정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통일된 계획과 지도 아래에 노동부문 소개와, 개인적 취업 도모'가 결합된 취업방침을 제시하였다. 그럼으로써 정부가 個體經濟를 발전시키는 것을 실업문제의 주요한 해결책으로 인정한다는 사실도 밝혔다. 뒤이어 전국 노동취업회의의 공문이 배포되어 취업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個體經濟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협조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개인상업의 경영을 곤란에 빠뜨리거나 개인사업경영자를 경시하는 경향을 삼가고, 합법적으로 사업하는 개인노동자들이 사회의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하였다.

동시에 1978년 헌법에서, 개인사업경영자는 법률에 의해서 경영을 해야 하고, 다른 개인사업경영자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제정하였다. 생산을 발전시키고, 특히 실업문제 해결 차원에서 개체경제의 역할을 인정한 이 공문은, 남의 노동을 착취하지 않은 個體經濟는 사회주의경제의 필수적이고 유익한 협조형태이므로 잘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당시 개인사업경영자의 사회적 지위는 여전히 낮았다.

1981년이 되자 個體經濟에 대한 제한은 한 걸음 더 완화되었다. 그 해에 공포된 〈中國共產黨 中央과 國務院의 경제활성화와 도시 취업문제 해결에 대한 몇 가지 규정〉에서 個體經濟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재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個體經濟의 건전한 발전을 가져오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간부와 보통국민들의 괴리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개인사업 경영자는 2명 이하의 '조수'를 '초청' 할 수 있고, 특별한 기계를 가진 자는 5명 이하의 '조수'를 '초청'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동시에 개인 사업자의 사회·정치적 지위는 국유기업과 集體企業의 직원과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하며, 그들 중 진보분자도 중국공산당과 중국청년단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규정은 個體經濟의 발전을 위해 보다 더 개방된 외부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공인을 고용하는 데 존재하는 노동착취문제는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였지만, 고용불가의 제도적 제한을 돌파함으로써 個體經濟의 발전, 나아가 민영기업 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1982년 9월의 중국공산당 12대 회의에서는 국가의 규정과 공상행정부문의 관리 하에, 도시나 농촌의 개인경영사업의 적당한 발전을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공산당 대표 회의에서 처음으로 개인경영사업의 발전을 장려한 것이었으며, 농촌으로 발전지역을 확산시키는 것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3.2. 民營企業의 再生

個體經濟 규모 확대의 결과로 나타나는 민영기업의 재생은, 고용노동자의 대우 및 이데올

로기의 고려 등의 문제 때문에 個體經濟의 회복보다 더 어려웠다. 문화대혁명이 한창이었던 1971년 福建省 石獅鎮에서 ‘지하공장’ 12곳을 수사하고 ‘신생자산계급분자’ 5명을 체포한 적이 있었다. 이 체포자 중에서 ‘像章大王’ 吳夏雲은 월수입이 그 당시 평균월급수준보다 훨씬 높은 300원에 이르렀는데, 이는 당시 사회에서는 절대로 수용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수사를 받았다. 그의 ‘불법적’ 수입 총 7,000원이 전부 몰수됐고 자신은 7년 징역형을 받았다. 그런데 1977년 석사진에서 소상품시장이 다시 나타났고, 이 때문에 석사진은 ‘資本主義復辟’의 전형으로 지정되어 투기분자 100여 명이 체포되었다. 기록영화 〈鐵證如山〉은 바로 석사진의 경우를 반면적 교훈으로 다루어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1981년 오하운은 석방되어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다시 공장을 설립했다. 당시에는 민영기업에 대한 국가정책이 아직까지 완화되지 못했으므로 동네의 명목을 빌려 공장을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李由(2000, p. 7)].

1981년에 들어서면서부터 〈人民日報〉를 비롯한 신문매체를 통해 전국에서 치열한 ‘민영 경제 대토론’이 벌어졌다. 1981년 5월 29일~9월 19일 간에 〈人民日報〉는 陳志雄⁽³⁾이 공인을 고용하여 개인 魚塘을 경영하는 일에 대해 전체토론을 전개하였는데, 선후 19명의 독자들의 의견이 신문에 게재되었다. 그런데 특히 ‘개인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한다,’ ‘공인에 대한 착취가 좀 있어도 놀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다수였다. 사실 〈人民日報〉에서 이러한 대규모의 토론을 시도한 것 자체가 장차 국가정책이 민영경제를 발전시키는 추세로 나아가리라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경제적 배경 하에서는 민영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발을 내딛기가 여전히 힘든 상황이었다.

1982년 12월 제5차 인민대표대회 5차회의에서 중국 제4부 헌법이 통과되어 다음과 같은 방침이 발표되었다. 즉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個體經濟는 사회주의공동소유경제체제의 협조 형태로서 국가가 個體經濟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행정관리를 통해 個體經濟를 지도하고 도와주며 감독한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헌법 제8조에 ‘수공업, 공업, 건축업, 운송업, 상업, 서비스업 등 각종 형태의 합작경제는 모두 사회주의공동소유경제체제에 속하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단체경제조직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단체경제의 발전을 장려, 지도하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이다. 이는 사실상 일부 합작경제와 단체경제의 명목으로 존재하는 민영기업의 발전의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도시와 농촌에서 보인 個體經濟의 빠른 성장에 따라 관련 정책도 보다 더 완화되었

(3) 陳志雄: 廣東省 高要縣 沙浦公社의 농민이었다. 1979년 개인적으로 어당 8묘를 청부 맡았고 1980년 청부한 어당은 105묘로 증가하였다. 그는 고정적으로 공인 1명을 고용하고 임시공인 400명을 일하게 하였다. 진지옹의 연 순수익은 만원이 넘어 당시에는 아주 높은 수입이었다.

다. 중국공산당은 〈현재 농촌경제정책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서, 농촌 개인사업경영자와 양식업자가 ‘조수’나 ‘제자’ 여러 명을 ‘초청’ 하는 것에 대해 ‘제창이나 선전을 하지 않으며 금지하지도 않았다. 그 발전추세에 따라서 유리한 지도를 하고 형식이 다양한 합작경제 형태로 이전하도록 인도한다’는 정책도 밝혔다.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三不一看’(不提倡, 不宣傳, 不取繕, 看一看) 정책이다.

이때에 이르러서 個體經濟 발전의 정책수립이 기본적으로 완성되었다. 個體經濟는 발전할 공간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민영경제 발전의 기반도 만들어 주었다. 사실 그 당시 민영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옳으나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다. 특히 安徽省의 ‘바보 果子’에 관한 논란은 등소평의 귀에까지 전해졌다. 그는 ‘바보 果子’의 기업주 年廣九를 개인사업경영자의 대표로 인식하였으며, 그에 대한 태도는 틀림없이 전국의 개인사업경영자 계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간파하였다. 그리하여 1984년 10월에 열렸던 中國顧問委員會(이하 중고위) 제3차 전국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여 일부 고위층 지도자들의 주장을 반박하였다[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1993, p. 91)].

‘그동안 기업주가 공인을 고용하는 일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다들 걱정을 많이 한 모양이다. 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大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냥 내버려두고 어떻게 발전할지 일단 지켜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고 잘못 건드리면 백성들이 정책이 또 바뀌었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인심이 안정적이지 못할 것 같다. 하나의 ‘바보 果子’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인심까지 흔들린다면 유익한 점이 없다. 일단 하게 하자. 그것이 왜 무서운 일인가?’

당시 우湖市에 있는 연광구의 ‘바보 果子’ 회사는 공인 100여 명을 고용하고 1981~1984년 동안 총 30여 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陳昌茂 외(1996, p. 229)]. 등소평의 발언은 중국 민영기업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또한 민영경제에 발전의 길을 개통하였다.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공인을 고용할 수 있는지, 혹은 노동소득을 착취하는 것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하여 정치권과 민간에게 이데올로기적인 고려가 아직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탈선행위’에 대한 ‘암묵적 허가’식의 ‘관용적인’ 정책에서부터 민영경제는 확실한 보호를 받았다.

3.3. 市場指向的 改革과 民營經濟의 安定的 成長

1984년 제12기 3중전회에서 이루어진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결정〉(이하 결정)의 통과는 중국이 계획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시장지향적 개혁의 목표를 세운 것을 상징한다. 이러한 전환은 의심할 여지없이 시장경제체제에 알맞은 경쟁력이 있는 민영경제에게 더 넓은 발전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물론 ‘계획이 있는 상품경제’라는 이행단계에 치해 있었지만, 일단 시장부터 개방하고 자유경쟁이 허가되면 민영경제의 큰 성장을 펼

연적으로 가져올 것이었다. 〈결정〉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경제는 계획이 있는 상품경제’라는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個體經濟의 발전전략을 정하였다.

‘중국의 個體經濟는 사회주의공동소유체제 하의 個體經濟이며,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경제의 필수적이고 유익한 협조형태이고, 사회주의경제에 종속된 것이다.’ ‘각종 형식의 경제와 경영의 공동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장기적 방침으로 삼아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集體經濟와 個體經濟 발전의 결림들을 없애는 것에 주의해야 하고 법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특히 노동위주와 분산경영형식에 맞는 분야에서 個體經濟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부지역에서 일부기업과 일부국민들이 근면한 노동을 통해 부유해 지는 것을 수용해야 나머지 많은 국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부유해 지도록 노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결정〉은 일부의 소규모 국유기업을 임대나 하도급의 형식으로 단체와 개인에게 넘기는 것을 수용했다. 이는 사실상 국유기업 민영화의 시작을 의미한다. 〈결정〉에 대해 등소평은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하였다.

‘이번의 〈결정〉은 잘 썼다.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해석도 잘했다. 우리 조상들이 못한 새로운 내용이 있다.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이 없었으면 이렇게 못 썼을 것이고, 써도 이단이라고 간주되어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다’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1993, p. 91)].

〈결정〉은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사회주의 대국이 처음으로 시장지향적 개혁목표를 확립하였다. ‘당시의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개혁이 사회주의소유제의 기반 내지는 중국의 정치·문화구조에 얼마나 큰 충격을 가져올 것인지, 또한 개혁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고통과 미망을 가져오고 어떠한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게 할 것인지 인식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역전할 수 없는 역사이다. 1984년 이전의 개혁은 어느 정도는 정부에 의해 ‘半自動的으로 推進 된 것이다’ [華生·張學軍·羅小朋(1988, pp. 14-15)]. 반면, 1984년 이후의 개혁은 ‘自動推進’의 성격을 더 많이 띤다. 일단 ‘상품경제’를 수용하고 시장지향적 개혁목표를 확립했다면, 공정한 경쟁이 수용되는 가운데 민영경제는 자신의 경쟁력으로 점차 국유경제를 대체하여 국민경제를 향상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1987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3차 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 초기단계의 기본적 노선과 민영경제의 발전 방침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현재 공동소유제 이외의 기타 경제형태는 지나치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시나 농촌의 個體經濟과 민영경제가 발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서로 다른 경제분야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종 소유제 형

식의 경제형태가 서로 다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민영경제, 특히 민영기업의 발전을 위한 튼튼한 이론적 기반과 정책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1988년 4월 제7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헌법 수정안에서 제11조는 이렇게 수정되었다. '국가는 민영경제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민영경제는 사회주의공동소유경제의 협조형태이다. 국가는 민영경제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민영경제에 대한 인도, 감독과 관리를 시행하다.' 또한 1988년에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기업임시조례〉가 공포되고 이를 통해 민영경제의 발전과 관리는 법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1988년 후반기부터 각 지방 공상업 행정관리부문에 의해 민영기업업체의 독립 등록과 그에 대한 감독, 관리가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3.4. 1990年代 以來 民營經濟發展政策의 重大한 變化

외국인 학자들은 1989년 천안문사태와 1978년 이래의 경제개혁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양자 사이에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모택동 이후의 경제정책이 이미 중국사회에 불가피한 정치적 영향을 미쳤다고 믿는다' (Deborah and Vogel(eds.) (1990, p. 2)). 중국의 일부 고위층까지 1989년 사태의 원인을 민영경제 추진의 탓으로 돌렸다. 등소평이 적시에 중고위 회의에서 이런 잘못된 사상경향을 교정하고 민영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기본 노선정책을 견지하였지만, 민영경제의 발전은 불가피하게 좌절 당하였다. 1989년에 전국의 개인공상업 경영자 수는 1988년보다 15.8% 감소하였다. 또 민영기업 종업자 수는 1990년에는 1989년보다 3.7% 증가하고 1991년에는 8.2%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1992년 이후의 두 자리수 증가율보다 많이 낮았다[程秀生(1999, pp. 14-15)].

1992년 초 등소평은 중국 남부지역을 시찰하면서 유명한 〈南巡講話〉를 발표하였다. 이 강화에서 사회제도의 평가표준과 사회주의의 본질 등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새로 천명하였다.

'(사회제도를 평가하는) 표준은 첫째, 주로 사회주의사회의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데, 둘째, 사회주의국가의 종합국력을 강화시키는 데, 셋째,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나 아니냐에 있다.' '사회주의의 본질은 생산력을 해방시키고 향상시키며 노동착취와 빈부격차를 없애고 공동부유의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南巡講話〉는 민영경제를 부진상태에서 벗어나 급속성장의 궤도에 올려 놓게 되었다. 1992년 중국공산당 제14차 대표대회 보고서는 등소평의 〈南巡講話〉의 바탕 위에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면서 중국공산당 13대에서 제기했던 다양한 형식의 경제형태가 장기적으로 공존하며 발전하는 소유제구조에 관한 논술을 거듭하였다. 이리하여 시장경제체제에서 민영경제는 중요한 경제형태로 인정받았다.

1997년 중국공산당 제15차 대표대회의 보고서에서 ‘공동소유체제를 중심으로 하여 각종 소유제 경제형태의 공동발전이 사회주의 초기단계의 기본경제제도이며, 비공동소유체제의 경제형태는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개인, 민영 등 비공유제경제형태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인도를 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만족, 일자리창출, 그리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중국공산당 제15차 대표대회와 제15기 4중전회에서는 규모가 큰 국유기업은 규제하고, 규모가 작은 민영경제는 활성화시키는 ‘抓大放小’의 원칙을 고수하여, 국유경제의 리더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국유경제에 대한 전략적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999년에 전국 제9차 인민대표대회 2차 전체회의에서는 헌법 제11조를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個體經濟, 민영경제 등 비공유제경제형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수정하여, 민영경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협조형태’의 지위에서 ‘중요한 구성요소’의 지위로 상승되었다. 2001년 7월에 중국공산당창립 80주년 기념대회에서 江澤民은 강화를 발표하였고, 처음으로 중요한 공식적 장소에서 다른 계층의 우수한 인재를 입당시킨다고 밝혔다. 이는 민영경제의 발전사상에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4. 民營經濟發展의 社會的 · 政治的 影響

4.1. 社會的 影響: 새로운 階層의 登場

민영경제의 발전은 중국의 경제구조를 완전히 바꿨을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종래의 공인계층, 농민계층과 지식인계층으로 나뉘던 단순한 사회계층구분은 이미 시대의 발전에 뒤떨어졌다. 최근의 사회학 연구성과⁽⁴⁾에 의하면 현대중국의 사회계층은 점점 다원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업별로 보면 조직자원과 경제자원, 그리고 문화자원의 소유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중국의 사회계층을 상층, 중상층, 중중층, 중하층, 그리고 하층 등 5개의 사회경제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다섯 등급은 다시 정부와 사회관리자계층, 경리인계층, 민영기업주계층, 전문기술자계층, 사무원계층, 개인사업경영자계층, 상업과 서비스업 종사자계층, 노동자계층, 농민계층, 그리고 無業 혹은 失業 · 半失業者계층 등 10개 계층으로 나누어진다. 모든 계층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지위도 교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각 계층은 사회적 지위를

(4) 中國社會科學院 ‘當代中國社會結構變遷研究’ 課題연구팀을 가르키는 말이다[陸學藝 編(2002, pp. 8-23)].

통해 소속된 등급의 배열을 볼 수 있다.

특수한 정치체제 하에 조직자원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문화자원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경제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드러나게 되면서 대부분의 경제자원을 가진 민영기업주계층과 개인사업경영자계층의 사회적 지위가 점점 높아지고 정치적 영향도 커지고 있다. 다만 이데올로기의 장벽으로 인해 민영기업주의 정치적 지위는 그들의 경제적 지위를 따르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영기업주계층의 정치활동 참여에는 큰 제한이 존재하고 있다. 주로 농민과 도시 실업인원들로 구성된 개인사업경영자계층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계층이며, 민영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그들이 생산규모를 확대시키고, 경영을 개선하고,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민영기업주계층으로 올라가서 확실하게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실현하였다. 새로운 계층의 등장은 개혁개방의 결과이며 사영경제발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4.2. 政治勢力이 經濟分野로의 浸透

중국에서 각 급의 정치, 행정권력은 지속적으로 경제분야로의 침투를 포기하지 않았다. 각종 ‘특수한 배경’을 가진 기업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민영기업들은 시장경쟁에서 열세에 몰렸다. 학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역사학자 費爾南·布羅代爾는 ‘중국기층의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무역왕래가 흥성한데, 정부는 키워주는 의도도 있지만 국가기기가 이 모든 것을 감독하고 있고 지나치게 부유한 모든 사람을 적대시하는 태도를 뚜렷이 가지고 있다’ [費爾南·布羅代爾, 顧良 역(1993, p. 654)]고 지적한다. 尹保雲은 ‘重農抑商’의 전통사상으로부터 비롯된 ‘官僚制經濟’의 특징은 아직까지 개혁 후의 중국경제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는 수공업과 상업에 대한 독점과 국민과의 이익 다툼에 끼어들고 있고, 관료제경제의 부에 대한 착취와 민영자본성장에 대한 억제로 인해 중국 민간자본의 성장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기에 ‘官僚制經濟’의 특징은 더욱 두드러진다. 즉, 각급의 정치세력은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제어하는 데 애쓰고 있다 [尹保雲(1999, pp. 69-82)].

정치세력의 경제분야 침투는 소위 ‘總體性精英與不分化的資本’ (총체성 지도자와 분리하지 않은 자본)이 나타나게 만들었다. 즉, 정치자본,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을 제어하는 자는 사실상 같은 집단에 속한 자이고, 그들은 개혁과정 중에 서로의 자본 전환을 쉽게 이를 수 있다. 이 집단의 원시자본은 그들과 그들의 윗세대가 가진 정치 또는 행정세력이다 [孫立平(1998)]. 중국은 이행기에도 권력집단 주체의 구성에 여전히 변화가 없고 원래의 정치권력자는 점점 정치·경제의 이중 권력을 가지는 세력으로 변해감으로써 정치·경제분야에서

이중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 이러한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투자의 위험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동시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대등하거나 대립할 실력을 갖추지 못한 민간경제세력이 대표하는 순수한 민영경제분야에는 능력이 있어도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戴建中(1995, p. 114)].

1998년에 중국사회과학원과 전국공상업연합회연구소의 「중국민영기업」이란 조사결과에 의하면 각종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 정부관리직을 사직하고 사업을 하는 자가 제일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보고서를 보면 이들의 등록자본은 평균수준의 1.8배, 판매량은 평균수준의 1.8배, 순이윤은 평균수준의 1.9배에 달한다고 한다[李由(2000, p. 11)]. 이것을 보면 중국의 권력계층이 일단 경제분야에 개입하면 어떤 우세를 가질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에서 정치적 배경이 없이 개인의 힘으로만 노력하는 개인사업경영자가 사업의 돌파적 진전을 이루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정치세력을 경제분야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민영경제발전의 건전한 환경을 마련하는 전제이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이 야말로 참뜻에서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영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 시장환경의 철저한 개선을 촉진한다.

4.3. 民營企業人이 政治分野로의 浸透

앞에서 언급한 정치세력의 경제분야로의 침투 이외에 민영기업인들이 자신이 가진 경제자원을 이용하여 정치적 지위의 상승을 도모하는 경향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민영경제의 실력이 강해짐에 따라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민영기업인의 정치적 영향의 확대는 앞에서 언급한 1999년의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헌법 수정과정에서 잘 나타났다. 즉, 헌법 제11조의 수정을 통해 민영경제의 지위는 협조형태로부터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상승되었다. '사회에 대해 예민한 감각을 가진 학자와 정치인들이 제일 주목해야 할 것은 헌법을 수정하는 제안을 실행하는 과정이다. 즉, 민영기업인을 대표하는 全國工商聯이라는 사회조직 및 그의 협조단체들의 몇 년에 거친 유세와 사정 등 꾸준한 노력을 통해, 민영기업인계층의 권익은 드디어 국가의 기본적 법인 헌법에서 보장을 받았다. 이 조직은 정부와의 장기간 정치적 협의를 통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것은 중국의 민영기업인계층에게도 가격을 홍정하는 권리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何清蓮(1999, pp. 117-118)].

앞에서 제기한 것은 사실 문제의 일면에 불과하다. 즉, 하나의 특수한 계층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회집단이 정치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국정치사에서 일어난 새로운 현상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영경제가 왜 이만큼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가의 원인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에 있다는 점이다. 이번의 헌법수정은 불과 하

나의 측면에서 민영경제가 국유경제보다 더 뛰어난 경제적 효율과 경쟁력을 보여주었을 뿐이며, 민영경제는 이미 국유경제를 대체하여 국민경제성장의 주요한 부문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민영기업인들은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공상연합회, 청년연합회 등의 단체와 조직에 가입하여 활기찬 자세로 다양한 사회정치활동에 참여하였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민영기업인들 중에 顯급 이상의 인민대표대회 대표 당선자가 5,400여 명,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당선자가 8명, 정치협상회의 위원 추천자가 8,500여 명,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 추천자가 46명이나 된다고 한다[張厚義·明立志 편(2001, p. 274)]. 그 밖에 수많은 민영기업인들이 다른 방식으로 사회정치활동에 참여하여 공식 장소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 관점을 발표한다.

민영기업인들이 왜 그토록 열정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가에 대해 분석해 보면, 중국의 경제와 정치개혁 정책에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 이외에 다른 의도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 건국 후에 생겨난 자본가에 대한 나쁜 인식과 공격, 남의 사유재산을 적대시하는 중국의 전통적 의식, 그리고 평균주의가 유행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유 없이 부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경영자들은 ‘정’ 맞는 ‘모난 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도 두려워한다. 이러한 불안 때문에 거의 모든 민영기업인들은 정치권에 접근하는 것을 좋아하고 장사를 잘함으로써 정치권에 들어가기를 희망한다. 중국기업인의 의식에는 확실히 자본에 대한, 또 돈을 벌고 쓰는 것에 대한 죄악감이 존재한다. 이러한 심리 때문에 그들은 ‘관직’을 매우 중요시한다. 관직을 통해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관료 중 핵심인물과의 거리를 가깝게 만듦으로써 정치·경제 권력자와 같이, 사업하는 데 유리한 자리에 서있게 만들 수 있다.

다른 한편, 민영기업인을 중국공산당에 입당시키는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가 가지고 있었던 매우 신중한 태도는 민영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큰 변화가 일어났다. 강택민은 중국공산당창립 80주년 기념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개혁개방 아래에 중국의 사회계층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이 서로 다른 소유제 제도, 다른 업종, 다른 지역 간에 빈번히 이동하고, 개인의 직업과 신분도 자주 변화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노선과 원칙을 실현시키는 데 자발적으로 분투하고 중국공산당 당원의 조건에 맞는지는 신당원을 모집하는 주요 준칙이다. 노동자, 농민, 지식인, 군인, 그리고 정부관리자 출신인 당원은 중국공산당의 기본구성원이며 기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원의 조건에 맞는 다른 사회계층의 우수한 인재를 입당시킴으로써 온 사회에서 당의 영향력과 응집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人民日報(2001)].

강택민의 강화는 중국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경제건설과 정치개혁 간의 상호영향 문제에 대한 생각을 신중하게 표출하였다. 6,400여 만 명의 구성원을 가진 집권정당이 적시에 새로운 계층을 흡수하고 용납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영향력을 확대하고 사회적 구성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당내에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심지어 반대하는 인사도 있었지만, 국가와 정당의 발전방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한 정당은 자신의 체제를 통해서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동시에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새로운 계층이 순조롭게 정치활동에 참여하여 적당하고 지속적으로 정치의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잘 동원해야 하다[亭廷頓·王冠華 외譯(1996, pp. 380-388)].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강택민의 주장은 바로 중국공산당이 계속해서 국가의 현대화 건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당정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이 협조하면서, 정당 자체의 발전에 관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全國工商聯 등에 의한 최근의 조사를 보면 민영기업인계층에서 공산당당원의 비중이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3년 민영기업인에서 당원의 비율은 13.1%이었는데, 1995년에는 17.1%, 그리고 2000년에는 19.8%로 증가하였다[戴建中(2001, p. 75)]. 深市의 경우에는,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22.2%[陸學藝 編(2001, p. 3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영기업인 중에 당원의 비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민영기업인계층으로부터 당원을 뽑은 결과가 아니라, 당정관리자, 국유기업의 관리자 등이 민영기업인 계층에 들어간 결과이다.

5. 맷 음 말

중국 민영경제의 발전은 특수한 이데올로기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정책의 제정과 변천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독특한 시각을 제공한다. 중국의 개혁, 특히 민영경제의 발전을 추진하는 여러 조치들은 개혁자와 경제학자들이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 밀바닥에 살던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본능에 의한 선택이라는 것이 더 적당할 것이다. 安徽省 小崗村의 18戶 농민들이 감옥에 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서로의 식구들을 돌보겠다고 맹세하면서 토지를 나누는 계약서에다 붉은 지장을 찍었던 것이 바로 聯產承包責任制의 시작이다. 이 중국농촌개혁의 핵심적 조치의 실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실험한 결과가 아니고, 빙곤으로 인한 죽음 앞에서 버티고 있던 농민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생명과의 도박이다. 그 후 농촌생산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인정되면서, 정부는 당시에 불법적 행위에 속하던 이 현상을 수용하고 점차적으로 전국지역에 보급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당시의 정치체제 하에서 중국 경제개혁을 시도했던 어려움과, 거기에 잠재되어 있던 엄청난 위험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민영기업의 공인고용문제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처음에는 공인을 고용하는 것을 엄금 하였는데, 시간이 경과한 뒤 공인을 ‘學徒’나 ‘幫手’(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라는 이름으로 호칭하였다. 또 고용한다는 뜻으로 ‘請’(초청한다는 뜻)이라는 말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공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완화되었다. 고용이 허가되는 공인의 수에 대한 제한도 점차 풀렸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경제개혁과정에는 확실히 다음과 같은 현상이 존재한다. 즉, 초기에는 민간역량에 의해 먼저 시동되었는데 병행되어야 할 법적 여건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대부분의 경제행위는 ‘불법적’ 이거나 ‘의거할 만한 법’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다. 국가정책과 관련 법률은 항상 시대의 발전에 뒤떨어졌다가 나중에 그런 ‘불법적인’ 경제행위와 현상들을 점차 인정하고 합법화시킨다. 林毅夫는 제도변천의 측면에서 중국개혁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개혁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기본적인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첫째, 일부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으키는 자발적 행위는 종래의 권력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즉 사회하부로부터 상부로 진행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법적인 규정이나 명령에 의해 강제로 구체제를 바꾸고 신체제를 채용하는, 즉 사회상부로부터 하부로 진행하는 것이다’ [林毅夫(1988)].

‘개방을 주된 전략으로 하여 형세에 따라서 적당하게 인도하는 중국의 경제개혁은 실제로는 이 두 가지 방식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먼저 부분적인, 혹은 지역적인 ‘반칙’과 ‘탈선’ 행위에 대해 정책 결정자들이 의식적으로 默許함으로써 자기제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첫 번째 방식의 제도변천의 장애물을 제거해 준다. 다음에 개혁에 따른 여러 변화가 정보의 가치를 줄이고 새로운 가치균형을 형성할 때 다시 두 번째 방식을 이용하여 인정하고 추진시키는 것이다’ [華生 외(1988, pp. 11-12)]. 이러한 중국개혁에 대한 이해가 다 맞다고는 할 수 없다. 그 당시 정책 결정자들이 과연 ‘의식적으로,’ ‘자기제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는지는 판단하기 힘들다. 사실은 개혁이 오히려 정책의 제어력을 잃게 하였기 때문에 개혁의 발전추세를 제어할 수 없었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요약하여 정리하면, 1950년대부터 민영기업에 대한 사회주의개조와 個體經濟에 대한 인위적 파괴로 인하여 중국의 민영경제의 발전은 20여 년간의 공백기를 가졌다. 개혁개방 후 민영경제의 발전은 어느 정도 이 공백기를 채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민영경제가 초기 단계에 빠른 성장을 보인 것은 광대한 농촌지역의 빈곤과 도시의 취업난을 해결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개인사업경영자와 규모가 작은 ‘붉은 모자’를 쓴 민영기업이 제일 먼저 농

촌에서 등장하였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국유기업이 배정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였으므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위하여 個體經濟과 민영기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민영경제는 장기적인 발전정책의 지도와 지지가 없는 데다가 사회 각 계층에 존재하는 선입견을 가진 여론 등의 장애요소 때문에 장기간 조심스러운 상태에 처해 있었다.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중국정부의 민영경제에 대한 발전정책은 여전히 1949년의 〈中國人民協商會議共同綱領〉과 중국공산당 8대에서 행한 陳雲의 강화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즉, 민영경제의 협조형태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89년의 정치사태를 겪고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가 발표되고 나서야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이데올로기적인 우려에서 점차 벗어났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유부문의 운영실적이 대폭 감소하였으므로 발전계획과 발전분야를 제한하며 민영경제의 발전에 일정한 자리를 양보하는 등 전략적인 조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1997년 중국공산당 15대 보고서와 1999년의 헌법수정안에서 한결같이 비공동소유경제를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의 특별한 지위로 인정하였다.

중국정당 내부와 일부 사회영역에서는 민영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여전히 반대 의견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형세에서 보면 중국정부는 민영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정책방향을 기본적으로 확립하였고, 기복이 큰 정책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WTO 가입은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내부와 외부로부터의 압력 하에서 중국의 정책변천은 뚜렷하게 가속된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민영경제는 장기간의 발전단계를 거쳐 어느 정도 경쟁력과 경제적 실력을 갖추고 서 중국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으며, 중국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대표하고 있다.

민영경제의 성장은 중국 종래의 경제체제를 철저히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치영역에도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다. 민영기업인계층이 등장하여 이 새로운 계층의 권리를 대표하는 中華全國工商業聯合會는 정부측과의 협의에서 날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건국이래 민간을 대표하는 가장 힘있는 단체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치사의 커다란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공산당은 다른 사회계층으로부터, 특히 민영기업인계층으로부터 신구성원을 모집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장차 그 정당의 성격도 다소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北京大學世界現代進程研究中心

전화: 86-10-62751658

E-mail: dnnzpp@yahoo.com

參 考 文 獻

- 羅榮渠(1997)：『現代化新論續篇』，北京大學出版社，p. 125.
- 戴建中(1995)：“中國私營經濟的現狀與‘市場過渡’”『戰略與管理』，제4호，p. 114.
- _____ (2001)：“現階斷中國私營企業主研究,”『社會學研究』，제5호，p. 75.
- 樊綱(1999)：“대출부진의 극복과 은행계통의 개혁,”『經濟研究』，제1호，p. 8.
- 費爾南·布羅代爾, 顧良 역(1993)：『15至18世紀的物質文明, 經濟和資本主義』，第2卷，三聯書店，p. 654.
- 孫立平(1998)：“總體性資本與轉型期精英形成。”第3차 華人社會 社會指標 연구세미나, 香港中文大學, 4月。
- 吳敬璣(1999)：“發展中小企業是中國的大戰略。”『改革』，제2호.
- 吳振坤(1998)：『中國私營經濟實務全書』，中華工商聯合出版社，pp. 71-72.
- 姚榮偉(1999)：“國家的體制革新,”『戰略与管理』，제6기，p. 91.
- 陸學藝 編(2001)：『當代中國社會階層研究報告』，p. 36.
- _____ (2002)：『當代中國社會階層研究報告』，社會學文獻出版社，pp. 8-23.
- 尹保雲(1999a)：『現代化通病』，天津人民出版社，pp. 316-330.
- _____ (1999b)：“官僚制與中國的現代化,”『中國社會科學季刊』，秋季號(總第27호)，pp. 69-82.
- 李由(2000a)：“민영경제의 푸른 하늘을 떠받쳐,”『改革』，제2호，p. 7.
- _____ (2000b)：“為個私經濟撐起一片藍天,”『中國改革』，第2期, p. 11.
- 人民日報(2001)：2001년 7월 2일.
- 林毅夫(1988)：“제도변천에 관한 경제학 이론: 유도성 변천과 강제성 변천,”『발전연구보고』，國務院農村發展中心發展研究所，제3호。
- 張維迎(1998)：“地区间競爭与中国国有企业的民营化”『經濟研究』，제12호.
- 張厚義, 明立志 편(2001)：『중국사명기업발전보고』，No. 2, 社會科學文獻出版社，p. 274.
- 程秀生(1999a)：“私營經濟: ‘光彩’未來,”『經濟研究』，제1호，p. 8.
- _____ (1999b)：“私營經濟: ‘光彩’未來,”『中國經濟信息』，제19호，p. 14-15.

-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1993):『鄧小平文選』, 제3권, 人民出版社, p. 370.
- 『中國人口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2000, p. 455.
- 『中國統計年鑑』, 각 연도.
- 陳昌茂 외(1996): “‘바보 果子’의 기복홍쇄로부터 얻은,”『中國私營經濟年鑑』, 中華工商聯合出版社, p. 229.
- 何清蓮(1999): “憲政中國與‘老權貴帶入新社會,’”『戰略與管理』, 제4호, pp. 117-118.
- 亨廷頓·王冠華 외 譯(1996):『變化社會中的政治秩序』, 三聯書店, pp. 380-388.
- 胡鞍鋼(1999): “中国经济增长的現狀, 短期前景及長期趨勢”『战略与管理』, 제3호, p. 34.
- 華生·張學軍·羅小朋(1988): “中國改革十年: 回顧, 反思和前景,”『經濟研究』, 제9호, pp. 14-15.
- 華生 외(1988): “中國改革十年,”『經濟研究』, 제11호, pp. 11-12.
- Deborah, Davis, and Ezra F. Vogel(eds.)(1990): *Chinese Society on the Eve of Tiananmen: The Impact of Reform*, Harvard University Press.
- Gilbert Rozman(1995):『中國의 現代化』, 江蘇人民出版社, p. 415, 435.
- <http://www.cei.gov.cn>(中國經濟信息홈페이지), 2000년 1월 31일.
- Neoh, Anthony(1999): ‘Helping China’s Private Sector,’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62, 50, Hong Kong, Dec 16.